

한진칼 감사위원회 규정

제정 2019년 5월 8일

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한진칼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감사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장 구성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"위원"이라 한다)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, 위원 중 1명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며,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④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정원 또는 제3항의 구성비율에 미달 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 (임기 및 해임)

- 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로 한다
- ② 위원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.

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9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의

제6조 (개최 주기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결산보고에 맞추어 일정한 날을 정하여 개최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

제7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9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대면 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,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(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)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 (권한 및 의무)

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 및 의무를 가지고,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의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권
- (2) 주주총회 의안,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주주총회 보고 의무

2.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회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 의무
- (2)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이사회 제출 의무
- (3)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
- (4)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
- (5) 기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
3. 감사에 관한 사항

- (1) 회사의 업무·재산 감사권
- (2) 상법 제342조의2의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·재산 조사권
- (3)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이사의 보고 수령권
- (4)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대한 대표권
- (5)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권한
- (6) 외부감사인 선임, 해임에 대한 승인권
- (7)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수령
- (8)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
- (9)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
- (10) 회사의 연간 감사계획에 대한 승인 및 전년도 감사 실적을 보고받을 권한
- (11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이사회 보고 의무
- (12)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시 사전 검토 및 승인권

4. 기타 법령,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

제11조 (관계인의 출석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4장 보칙

제13조 (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)

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,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사의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

제14조 (간사)

- ① 위원회는 간사를 두고, 대표이사가 정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

제15조 (감사록의 작성)

-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16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[부칙]

1. 본 규정은 2019년 5월 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19년 11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